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오승표 징계 내지 해고해라
내용	<p>오승표 이 시-발놈은</p> <p>본인이 신고한 "은평경찰서의 주차장법과 건축법 위반 조사" 인권담당 감사관으로 배정되었는데(오승표.pdf)</p> <p>1. 처리기한 연장하더니</p> <p>2. 어처구니 없게도 이송한다는 통지도 없이</p> <p>은평경찰서 이주철로 배정을 바꾸어 놓았다(이주철.pdf).</p> <p>역시나 "수사에 있어서 조작이 필수"인 경찰답게 ⇒ https://seokgung.com/inforequest.htm#ex</p> <p>전자 공문서 조작 범죄인 거 알고 있지?</p> <p>[형법]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니들 서울시경찰청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없이 늘 이렇게 개판으로 노냐?</p>
첨부 파일	이주철.pdf 오승표.pdf

기피부서 정보

기피부서	경찰청 감사관 인권보호담당관
기피유형	공무원 비리
기피자 정보	오승표
기피사유	인권담당보호관 오승표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이송 통지도 없이 범죄단 은평경찰서로 이송한 개만도 못한 쌍것 웃기는 일이지 범죄자에게 저지른 자신의 범죄를 판단하라고 말기는 이런 개쌍-놈을 어떻게 믿냐?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경찰청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603-1301319
접수일	2026-03-31 14:58:34
담당자(연락처)	오승표 (02-700-2317)
처리에정일	2026-04-08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통지일	2026-04-06 08:14:39
처리결과 (답변내용)	김명호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603-127078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서울은평경찰서 주차장에 대한 민원에 대해 상급기관의 검토를 요청한 것을 서울은평경찰서로 이첩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시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먼저 서울은평경찰서로 이첩한 것에 대하여 해당 내용은 행정기관 시설에 관한 민원으로 서울은평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에서 처리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송한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요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는 설치·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바,
서울은평경찰서는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고
'21. 8.경 설치된 바리게이트는 해당 기관의 안전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경찰청사 방호를 위한 조치임을 양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감찰정보1계 경위 오승표